

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·방제 기준과 방법(제7조의9제1항 관련)

1. 소독·방제 공통 기준

- 가. 소독·방제 작업 전에 작업 참여자와 사용할 소독·방제장비에 대한 소독 및 작업 참여자의 개인보호구(방역복, 보안경, 방진마스크, 장갑, 장화) 착용을 완료해야 한다.
- 나. 소독·방제에 사용하는 약품은 「약사법」 제2조제7호다목 및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동물용 의약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제품을 용법·용량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.
- 다. 곤충·쥐 등 질병 매개체의 특성과 각 소독·방제 시설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.

2. 소독 방법

- 가. 소독하는 시설은 청결구역, 준청결구역, 오염구역으로 구분하고, 청결구역, 준청결구역, 오염구역 순서로 실시한다.
- 나. 별표 2에 따른 소독종류별 실시방법 및 소독대상별 소독방법을 준수해야 한다.

3. 방제 방법

가. 물리적·환경적 방법

- 1)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.
- 2) 질병매개곤충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처리나 열풍 등의 방제법을 사용한다.
- 3)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덩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.

나. 화학적 방법

- 1)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, 살충제 또는 기피제를 사용해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.
- 2) 친환경인증농가는 유기합성 성분이 들어있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

다. 생물학적 방법

- 1)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천적을 이용한다.
- 2)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.

라. 물리적·환경적,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 중 해당 시설에 적합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, 사전에 고압세척·물세척 등의 방법으로 축사의 먼지와 유기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.

마. 다음의 방법에 따라 쥐의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.

- 1) 음식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.
  - 2) 쓰레기 더미, 퇴비장, 풀이 우거진 담장 등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.
  - 3) 건물의 출입문, 환기통, 배관, 외벽,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쥐막기처리를 해야 한다.
  - 4) 쥐제거제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.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독·방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